의안번호	2211632
의 뢰 인	임미애의원
회 답 일	2025. 8.8.
추계번호	25E3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 등이 받은 지원금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수령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942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1,597억원(연평균 399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금 비과세 (안 제104조의36)	−942	−219	−219	−219	−1,597	−399

※ 본 추계 결과는 어업자의 감척 지원금 수령액만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수변화를 추계한 결과로, 어업자별 실제 종합소득금액, 공제내역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4조의36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어선·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 등이 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어선·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을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04조의36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2025년 중 시행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1)]

○ 법 시행일 이전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전체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가정

○ 감척 대상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지만, 2024년 감척 지원금 수령자가 모두 개인인 것을 반영하여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모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산출

○ 2018~2024년 지원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세수효과는 2026년에 발생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발생(징수 기준)하는 것으로 가정

❑ 연근해어선 감척에 참여한 어업자의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이하 '감척지원금') 수령액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1)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항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2항: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연간 근해어선 및 연안어업 감척건 수 및 감척 지원금 지급액(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을 바탕으로 계산한 어업자의 연도별 평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 평균 기타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산출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 개인별 소득 규모, 소득 원천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연도별 감척지원금 평균 수령액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액을 산출[2)]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연근해 어선 감척 현황

❑ 2018~2024년 동안 근해어선 및 연안어업 감척건 수는 1,813건으로, 이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액은 5,960억원 규모임

○ 2018~2024년 근해어선 감척 수는 368척으로, 이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액은 4,854억원 규모임

○ 2018~2024년 연안어업 감척 수는 1,445척으로, 이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액은 1,106억원 규모임

2) 법정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음

[표 2] 어선·어구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척, 백만원)

업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근해어선 감척 수	2	13	53	86	67	65	82	368
폐업지원금	1,229	4,423	21,959	58,009	58,403	46,163	82,980	273,166
매입지원금	660	7,632	30,458	42,212	30,694	40,058	60,568	212,282
합계	1,889	12,055	52,417	100,221	89,097	86,221	143,548	485,448
연안어업 감척 수	292	360	176	109	117	207	184	1,445
폐업지원금	7,972	14,771	7,699	5,585	10,379	16,294	11,292	73,992
매입지원금	5,097	5,567	4,139	3,096	4,284	6,906	7,496	36,585
합계	13,069	20,338	11,838	8,681	14,663	23,200	18,788	110,577
근해어선·연안어업 감척 수	294	373	229	195	184	272	266	1,813
폐업지원금	9,201	19,194	29,658	63,594	68,782	62,457	94,272	347,158
매입지원금	5,757	13,199	34,597	45,308	34,978	46,964	68,064	248,867
합계	14,958	32,393	64,255	108,902	103,760	109,421	162,336	596,02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2) 추계 방법

❑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건 수,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액(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활용

○ 어업자 등이 수령한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3]하므로, 필요경비(60%)[4]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적용

○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어업자별 감척지원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과세대상소득(사업소득 등)의 유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기타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상황

❑ 자료의 한계로 다른 과세대상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어업자의 감척지원금 수령액만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어업자의 평균 세액감면액 산출

○ 연도별로 연안어선, 근해어선을 감척한 어업자가 수령한 평균 감척 지원금 수령액을 바탕으로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평균 세액감면액 산출

-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각각 150만원)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특별세액공제 규모를 알 수 없어 표준세액공제(7만원) 적용

○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연도별 감척건수 및 감척지원금 집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어업자의 평균 기타소득금액이 모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후, 표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세액감면액 추정

- 기타소득금액은 감척지원금 수령액에서 필요경비(감척지원금 수령액의 60%)[5]를 차감하여 산출

○ 어업자의 평균 세액감면액에 어업자 수(감척건수)를 곱하여 귀속연도별 세수효과 산출

---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호의2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함

5) 2018년 감척지원금 수령액의 경우 수령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2019년 이후 수령액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

[표 3] 어선·어구 감척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추정

(단위: 척,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근해어선 감척 수 (A)	2	13	53	86	67	65	82	368
건당 매입·폐업지원금 합계액	945	927	989	1,165	1,330	1,326	1,751	–
건당 소득세 추정액 (B)	87	122	132	160	187	186	257	
전체 소득세 추정액 (C=B×A)	174	1,583	6,977	13,747	12,512	12,063	21,060	68,115
연안어업 감척 수 (D)	292	360	176	109	117	207	184	1,445
건당 매입·폐업지원금 합계액	45	56	67	80	125	112	102	–
건당 소득세 추정액 (E)	0.6	1.9	2.5	3.2	6.1	4.9	4.3	
전체 소득세 추정액 (F=D×E)	181	667	440	353	712	1,024	800	4,176
근해어선·연안어업 감척 수	294	373	229	195	184	272	266	1,819
전체 소득세 추정액(G=C+F)	355	2,250	7,416	14,100	13,223	13,086	21,860	72,291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 등이 2018~2024년 기간 동안 수령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경우 약 72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이후 근해어선 및 연안어선 감척 수 및 감척지원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에도 2024년의 세수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2029년 4년간 1,5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6년은 2018~2024년 및 2025년 지급된 감척 지원금에 대한 세수효과가 동시 발생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금 비과세 (안 제104조의36)	−942	−219	−219	−219	−1,597	−399

※ 본 추계 결과는 어업자의 감척 지원금 수령액만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수변화를 추계한 결과로, 어업자별 실제 종합소득금액, 공제내역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